

의안번호	제 31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7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태훈, 노금식, 최정훈,
김성대, 오영탁, 이옥규,
임영은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3개 광역자치단체 및 6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임받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만들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 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안 제40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2023. 6. 2 ~ 6. 7.(5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익매각이 가능한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